

2005. 1. 29(토)
제1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

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산업건설위원회

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5. 1. 18. 제천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. 20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5. 1. 24(제109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건설과장 이종식)

가. 제안이유

2004년 3월 11일 법률 제0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규정(제2조, 3조)
 -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외 5개 항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
 -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포함 10인이상 20인이내
- 자문단회의(제6조)
 -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 개최,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
-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(제9조)
 -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 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.
- 운영규정(제14조)
 - 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수 있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동수)

[法的檢討]

-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「법령의 범위안에서」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.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 관리자문단을 구성·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제2항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4년 10월 15일 입법예고 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의 규정에 의거,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음.

[行政的檢討]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 관리자문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당연한 것이며,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.
즉 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은 제천시의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의 정책에 관하여 기술적 자문 역할을 하고, 안전관리위원회는 제천시의 안전관리 정책 등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상호역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함.
- 자문단은 순수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는바 관련자를 관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함.
참고로 본 조례안은 충북도의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표준안과 동일함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가들이 구성원이 돼야 하는 거죠?
(박종유 의원)
-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? (박종유 의원)
- 관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타지방에서도 영입을 해서라도 구성원을 할 계획인지? (박종유 의원)
- 안전관리자문단과 안전관리위원회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죠?
(김기상 의원)
- 안전이나 재해에 관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이 우선하는가 아니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우선하는가? (김기상 의원)
-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원 중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까? (김기상 의원)
- 안전관리나 재해중에서 대략 큰 것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?
(이재환 의원)

나. 답변요지 (건설과장 이종식)

- 민간전문가가 주로 대상이 되겠음.
- 관내 2개 대학과 기술사, 건축사들을 파악을 하고 있음.
- 분야별 전문가 없으면 인근 지역에서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.
-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단체장이 주로 해당이 되고 협의안건을 제출 할 때는 자문단에서 세부적인 자문을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가 있음.
- 안전관리위원회는 총괄적인 계획을 심의 교정 의결하는 위원회고 자문단은 실질적인 시설물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틀로 봐서는 하드웨어에는 위원회가 되고 그밑에 세부적인 걸로 봐서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음.
- 기관단체장이 안전관리위원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장이 전문가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라고 봄.
- 예를 들면 대구 지하철방화사건, 지진, 해일 이런 등의 큰 안전관리 틀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음.

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내용

“ 없 음 ”

8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9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부. 끝.